

공 시 송 달 공 고

국유재산법 제3조 및 제7조에 의거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조치 예정(최고)를 2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1. 제목: 무단점유 공간에 대한 조치 예정(최고)

2. 법적근거: 국유재산법 제3조 및 제7조

3. 공고기간: 2020. 10. 26. ~ 2020. 11. 9.(15일간)

4. 공고대상

가. 대상자: 정*화

나. 대상재산: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9, 5층

5. 공고내용

가. 귀하가 우리청의 수차례 유상사용 안내 및 명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·수익하며,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관리비 또한 납부하지 않는 바, 행정재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로써 **단전·단수**를 할 예정이니 **2020년 11월 9일까지** 의견을 제출하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단전·단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,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조치일: 2020. 11. 12.

6. 의견제출 및 기타문의

가. 주소: 서울시 종로구 종로 6,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

나. 전화 02)6967-9223, 팩스 0505-005-1101

2020년 10월 26일

서울지방우정청장